관광진홍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460 발의연월일: 2020. 11. 18.

발 의 자:이병훈·김승원·박완주

윤재갑 • 이상헌 • 신영대

이장섭 · 김철민 · 박성준

유정주 · 신정훈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짐에 따라 타 지역 주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특별관리지역 지정여부를 쉽게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, 특별관리지역의 효율적인 지정·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 및 정보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 지정현황을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, 특별관리지역을 지정·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별관리지역의 지정·운영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.

아울러 현행 위임 조항을 정리하여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함(안 제48조의3).

법률 제 호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의3제2항 중 "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"를 "특별관리지역으로"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중 "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의"를 "특별관리지역의"로, "고시하여야"를 "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이 경우 해당 지역이 둘 이상의 시·도나 시·군·구에 걸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 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한다.
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 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.

- ⑦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 안의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 지정현황을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, 특별관리지역을 지정·운영하는 지 방자치단체와 그 주민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⑨ 그 밖에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요건, 지정 절차,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48조의3(지속가능한 관광활성 제48조의3(지속가능한 관광활성 화) ① (생략) 화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 ② ------구청장은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 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 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----특별관리지역으로----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-----. 이 경우 해당 지역이 수 있다. <후단 신설> 둘 이상의 시·도나 시·군·구 에 걸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·도지사 또 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특별 관리지역을 지정한다. <신 설>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・ 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 장에게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 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 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 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③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 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 ·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 며,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

④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 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 ·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의 위치, 면적, 지정일시, 그 밖에 조례 로 정하는 사항을 <u>고시하여야</u> 한다.

⑤ (생 략) <신 설>

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<u>4</u>
<u>다만, 대통령령으로</u>
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
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
<u>다.</u>
<u>⑤</u>
두 내 키
<u>특별관</u> 리지역의
<u>니시틱의</u>
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
고시하여야
<u>⑥</u> (현행 제5항과 같음)
<u>⑦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</u>
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 안의
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
는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
에 따라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
<u>수할 수 있다.</u>

<신 설>

<신 설>

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 관리지역 지정현황을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 야 하며, 특별관리지역을 지정 ·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 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⑨ 그 밖에 특별관리지역의 지 정 요건, 지정 절차, 행정적· 재정적 지원 등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